

2001년도
선도연구자 지원사업 신청요강

2001. 2

한국학술진흥재단

I. 사업목적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II. 기본계획

1. 지원예산 : 14,300 백만원(계속과제 지원비 포함)

2.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지원방향

-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연구계획서 뿐만 아니라 연구업적도 중시하는 심사체제 확립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의 극대화
 - 패널심사와 우수심사를 병행하여 다단계 및 이중심사를 실시함
- 연구지원 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도모
- 연구비 지원의 관리 및 사후평가 강화
- 적정 연구비 신청 유도
 - 연구과제 성격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

4. 지원형태 및 규모

가. 지원형태 : 단독연구

나. 지원규모 : 과제당 2000만원 이내

※ 적정연구비 이상 신청시 심사에 반영

다. 연구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까지 인정

(단, 2년과제는 선정예정과제의 40%이내 지원 예정)

Ⅲ. 공모 및 신청

1. 공모방법

- 대학의 총(학)장 및 학회장에게 공문발송을 통하여 공고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하여 공고

2.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는 연구자가 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온라인 신청함.
 - ※ 연구업적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은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의 재단의 학술 연구자 정보DB를 활용함으로,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는 온라인신청 마감일까지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동 사업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연구계획서 및 대표논문 2편(최근5 년간) 소속기관의 기관장이 수합하여 일괄 신청함.

3. 신청서류

- 연구계획서(재단 소정양식) 6부
- 최근 5년간('96.1.1 - '00.12.31) 대표적인 연구논문 2편 각 2부(사본가능)
 - 우측 상단에 과제번호 표기
 - 각 2부중 1부는 필히 인적사항(본문내용 포함) 삭제후 제출
 - 대표논문 2편은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5편이 아니어도 무방함
- ※ 신청서류 미제출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4. 신청 기간 : 2001. 6. 15(금) 18:00 한

▶ On-line 신청기간 : 2001. 6. 11(월) ~ 6. 15(금) 18:00한

- ※ On-line 신청마감일(6. 15)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과제번호 부여 : 2001. 6. 16(토) ~ 6. 18(월) (재단 홈페이지 공고)
- ▶ 연구계획서 및 대표논문제출마감 : 2001. 6. 22(금) 18:00 한

5. 신청자격 및 요건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인문·사회계열(예·체능계열 포함) : '96.1.1~'00.12.31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권위있는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

- 자연계열 : '96.1.1~'00.12.31 사이에 국제적 수준 및 권위있는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 및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

단,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등록 완료된 국제 특허 포함)이 반드시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SCI급(SCI & SCIE) 학술지에 논문 게재가 곤란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 제출 요망

- ☞ 예고 : 2002년 부터 인문·사회계열은 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자연계열은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이 3편 이상 포함되도록 상향 조정할 예정임

6.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교수해외파견연구비 포함)를 지원받고 해당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마감

- 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신청마감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1년도 교수해외파견연구 및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강의파견 수혜자

나. 연구 참여 제한

- 본 선도연구자 지원사업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신청시기부터 적용)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1.12.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 교육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와 기공모된 사업중 탈락이 확정된 과제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교육부 두뇌한국(BK)21사업 참여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 계 별	심 사 내 용	
1 단계	행정요건 심사	신청자격 여부
2 단계	연구업적 및 대표 논문심사	양적 및 질적 평가
3 단계	전공심사	연구계획서 심사
4 단계	종합심사	예산배분 및 과제선정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심사주관 : 재단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 검토

나. 제 2 단계 심사 (연구업적 및 대표 논문심사)

- 심사주관 : 패널심사단
- 심사방법 : 세부 분야별로 연구업적에 대한 계량적 및 질적 평가
- 심사내용 (항목 및 배점) : 4개 항목 50점

구 분	심 사 항 목	심 사 기 준
연구업적 (30점)	학문발전의 기여도	연구업적의 학문적 기여도 및 관련 학계에 활용·파급효과
	연구업적의 수준	연구업적 수준 및 학문적 성과
대표논문 (20점)	대표 논문 A의 수준	대표논문 A의 질적 수준
	대표 논문 B의 수준	대표논문 B의 질적 수준

- 심사결과 : 세부 분야별로 연구업적 및 대표논문에 대한 계량적 및 질적평가

다. 제 3 단계 심사 (전공심사)

- 심사주관 : 전공심사단
- 심사방법 : 5인이내의 우송심사
- 심사항목 (50점)

심 사 항 목	심 사 기 준
연구의 필요성	기존연구와의 비교 및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청과제의 독창성·참신성, 국내 연구동향에 견주어볼 때 학문발전의 기여도
연구목적의 명료성	연구의 구체적 목표 설정 여부 및 연구목적과 연구수행 내용의 일치 여부
연구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연구목적과 연구방법간의 연결성, 적합성여부 및 연구수행방법, 이론적 배경 등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과제 종료후 예상되는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대 효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연구과제의 수행에 사용되는 연구비 및 연구기간 설정의 타당성

라. 제 4 단계 심사 (종합심사)

- 심사주관 : 학술연구심사평가 총괄위원회
- 심사방법 : 예산 배분 및 지원과제 선정

2. 지원과제 선정

- 단계별 심사결과를 합산한 고득점순위에 의하여 학문분야별로 선정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지급

가. 지급방법 : 실행예산서 접수 후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및 금액

구 분		1년 연구과제	2년 연구과제
1차	시기	지원과제 확정후	지원과제 확정후
	금액	지원결정액의 100%	1차년도 지원결정액
2차	시기	-	중간보고 평가후
	금액	-	2차년도 지원결정액

2. 연구비관리

가. 관리방법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나. 연구비 회수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 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당초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연구기간 종료후 2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1. 제출방법 : 각종보고서는 소속 기관장을 통해 제출함

2. 중간보고서 : 다년과제만 해당

가. 제출시기 : 연구개시후 10개월 이내

나. 제출자료 : 재단의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 ※ 당초 계획에 의한 연구진행여부 및 차기 연구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평가한후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3. 결과보고서

가. 제출시기: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

나. 제출자료

- 연구결과논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게재 요청된 논문) 또는 학술저서
- * 학술지 투고접수증 첨부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 사용내역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 논문초록
- ※ 위의 자료는 한글 버전 3.0 이상 또는 MS워드로 작성하여 E-mail(result@ms.krf.or.kr)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제출 완료시까지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교수해외파견 연구비 포함) 지원을 제한함

4. 최종 연구결과물 발표

가. 연구결과물 발표에 대한 책무

선도연구자 수혜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예 고>		
◇ 2002년 지원과제부터 최종연구결과물은 아래와 같은 학술지(저서)에 게재(출판)되어야 함		
사업/연차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선도연구자지원> ○ 1년과제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교육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국제적 수준(A&HCI, SSCI급) 학술지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교육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국제적 수준(SCI급) 학술지
	○ 2년과제 -전문학술저서	SCI급 (SCI & SCIE) 학술지

나. 제출시기

- 국내·외 학술지 별쇄본 또는 게재논문(게재확인서 포함), 전문학술저서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결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KRF-2001-041-○○○○○○○)”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1-041-○○○○○○○)”

※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음

다. 연구결과물 미발표자에 대한 관리

-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는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교수해외파견 연구비포함) 지원을 제한함
- ※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는 재단 소정평가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급은 경고 및 3년간, D급은 경고 및 5년간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5. 연구성과의 사후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성과로 발생한 제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연구책임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대학 등의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 재단이 당초 연구비 지원시에 특정조건을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VII. 기타 사항

- 심사 학문분야 코드는 재단에서 정한 학문분류표를 참고하여 분야명 및 code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람.
-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 바람.

제출 및 문의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1팀

TEL (02)3460-5572~5 FAX (02)3460-5580

(붙임) 2001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재단사업 공통)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석·박사 과정)의 수당	-석사과정생 : 20~40만원/월 -박사과정생 : 30~60만원/월
② 연구 활동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연구참여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1인당 월 20만원 이내 (인문사회분야는 월 25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DNS)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이내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③ 직접성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및 재료구입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및 내구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애용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게재료 및 특허출원비 	-실제 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에 한함)

※ ②항목은 단독연구 4백만원 이내, 2인연구 7백만원, 3인이상 연구는 9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연구기기중 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치 않음

#

※ 접수 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 과제 번호	온라인 마감후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0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소 속 :		

6 () 1 , 5 .

※접수번호	On-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과제번호	온라인 마감후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국문 :

영문:

1 ()

2 ,

3 ()

4

1

구 분	1차년도	2	합 계	비 고
재 단 신 청 액	천원	천원	천원	
자비 및 기타	천원	천원	천원	

()

항 목	금 액	산 출 기 초 (단위 : 원)
① 인 건 비	· 연구보조원 수당 천원	
② 연구활동 경비	· 연구활동비 천원	
	· 연구회의비 천원	
	· 여비 천원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천원	
	· 공공요금 등 잡비 천원	
③ 직접성 경비	· 조사연구비 천원	
	· 문헌 및 재료구입 천원	
	· 장비사용료(임차료) 천원	
	· 연구기기비 천원	
	· 논문 게재료 및 특허출원 천원	
계	천원	

2

1

()

2)

항 목		금 액	산 출 기 초 (단위 : 원)
① 인 건 비	· 연구보조원 수당	천원	
② 연구활동 경비	· 연구활동비	천원	
	· 연구회의비	천원	
	· 여비	천원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천원	
	· 공공요금 등 잡비	천원	
③ 직접성 경비	· 조사연구비	천원	
	· 문헌 및 재료구입	천원	
	· 장비사용료(임차료)	천원	
	· 연구기기비	천원	
	· 논문 게재료 및 특허출원	천원	
계		천원	

2

2

4

-

-
